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5일. 평창군수(건설과장)

나. 회부일자 : 1999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99년 10월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박현창)

가. 제안이유

-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12.22일 농어촌정비법과 '95.6.23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중 “농지개량”을 “농업기반정비”로 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안 제1조)
-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종합검토결과

-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2. 2. 1일 조례 제279호로 제정하였으나, '94.12.23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상 “명칭”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끝 .